

의안번호	2214572
의 퇴 인	정일영의원
회 답 일	2026. 1.29.
추 계 번호	25B640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 등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점자등표시기준 확대를 위한 지원을 하게 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23억 1,800만원, 2031년 25억 9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총 120억 6,100만원(연평균 24억 1,22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지원 대상 업체 수(A, 개)	13,525	13,525	13,525	13,525	13,525	67,625	13,525
제품 개수(B, 개)	8,400	8,400	8,400	8,400	8,400	42,000	8,400
점자 표시 비용(C, 원)	20	21	21	22	22	-	-
추가재정소요 (D=A×B×C, 백만원)	2,318	2,364	2,411	2,460	2,509	12,061	2,412

- 주. 1. 향후 지원 대상 업체 수, 제품 개수 및 점자 표시 단가의 증감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증감 가능
 2.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3.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4.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5.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0조(안전기준의 확인 및 한글표시기준 등)	제8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표시하는 자는 시각장애인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8항 각 호의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겉면 또는 포장에 점자 등의 표시(이하 “점자등표시기준”이라 한다)를 하여야 함(제9항 신설)	의무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항에 따른 점자등표시기준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10항 신설)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0조 (안전기준의 확인 및 한글표시기준 등)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적용¹⁾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은 위해성 있는 화학물질 등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점자등 표시기준 확대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기준 마련 등을 위해 ‘화학제품 안전관리’ 사업을 진행중이며, 내역사업인 ‘생활화학제품 관리제도 이행지원’의 2026년 예산으로 5억 2,000만원이 편성됨

※ [참고자료] 품목별 필수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2026.1. 기준, 단위: %)					
	2027	2028	2029	2030	2031
소비자물가상승률(CPI)	2.0	2.0	2.0	2.0	2.0

- 본 추계에서는 법 제10조²⁾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신고·승인된(2025.12. 기준) 업체 중 영세 기업에서 제조·수입하는 제품에 점자 인쇄 비용을 지원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추계
 - 업체당 1개의 제품에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
- 추계 방법은 대상 업체의 제품 개수에 점자 표시 비용을 곱하여 산출
 - (지원 대상 업체 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신고·승인된 업체 수 15,819개에 소상공인 비율 85.5%을 적용한 13,525개 업체
 - 소상공인 비율은 현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신고·승인된 업체의 기업 규모 관련 자료가 부재하여 통계청의 제조업 기업 규모별 업체 수의 소상공인 비율인 85.5%을 적용하였으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신고·승인된 업체의 실제 소상공인 비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동 가능
 - 향후 지원 대상 업체 수의 추이를 예측하기가 곤란하여 지원 대상 업체 수는 추계 기간 동안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표 2] 제조업 기업 규모별 업체 수(2023년 기준, 국가데이터처 자료)

구분	업체 수(개)	비율(%)
소상공인	459,461	85.5
소기업	67,905	12.6
중기업	9,484	1.8
대기업	730	0.1
전체	537,580	100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사업체조사」 (검색일: 2026.1.29.)

- (제품 개수) 8,400개
 - 법 제49조³⁾에 따라 제조·수입업자는 2년마다 제조·수입량을 보고해야 하며,

- 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기준 등) ① 제9조 제1항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아야 한다.
- 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기록 및 보고) 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고 그 기록을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제조 또는 수입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품명과 수량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들어있는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3. 제조 또는 수입한 살생물제의 명칭·제품명 및 수량
 4.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5.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의 제품명 및 사용량

2023년 기준 제품 1개당 1년간 평균 제조·수입량은 8,402개이므로 지원 대상 제품 개수는 8,400개로 가정

- 향후 제품 1개당 1년간 평균 제조·수입량의 추이를 예측하기가 곤란하므로 지원 대상 제품 개수는 추계기간 동안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점자 표시 비용) 20원 = 품목별 문구 수 2개 × 점자 인쇄 단가 10원
 -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인 [참고자료]의 품목별 필수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 수 87개에서 품목 개수 43개를 나눈 값은 2.02개이므로 품목별 평균 문구 수는 2개로 가정
 - 한국점자인쇄에 따르면 문구 1개당 점자 인쇄 단가는 10원
 - 점자 표시 비용에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 등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점자등표시기준 확대를 위한 지원을 하게 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23억 1,800만원, 2031년 25억 9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총 120억 6,100만원(연평균 24억 1,200만원)으로 추계됨

[표 3]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점자등표시기준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지원 대상 업체 수(A, 개)	13,525	13,525	13,525	13,525	13,525	67,625	13,525
제품 개수(B, 개)	8,400	8,400	8,400	8,400	8,400	42,000	8,400
점자 표시 비용(C, 원)	20	21	21	22	22	-	-
추가재정소요 (D=A×B×C, 백만원)	2,318	2,364	2,411	2,460	2,509	12,061	2,412

- 주. 1. 향후 지원 대상 업체 수, 제품 개수 및 점자 표시 비용의 증감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증감 가능
 2.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3.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4.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5.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6.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②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2년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살생물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제조 또는 수입한 살생물물질의 명칭과 양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의 제품명 및 수량,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 및 살생물물질의 명칭과 양

IV. 부대의견

- 향후 지원 대상 업체 수, 제품 개수 및 점자 표시 비용의 증감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 가능
- 지원 대상 업체 수는 관련 자료가 부재하여 통계청 자료를 준용하였으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신고·승인된 업체의 실제 소상공인 비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동 가능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장우윤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우윤	02-6788-3735	jangwy93@assembly.go.kr

[참고자료] 품목별 필수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4)

품목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
세정제	· 다른 제품과 섞어 사용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으니 섞어 사용하지 마시오 · 표시사항에 기재된 제품의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마시오 ·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시 환기를 충분히 하시오 · 장갑, 마스크 등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자동차 실내에서는 사용하지 마시오
제거제	· 자동차 실내에서는 사용하지 마시오
세탁세제	· 어린이가 삼키지 않도록 주의하시오 · 제품의 내용물을 분무기 등에 담아 분사하지 마시오 ·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오 · 용기와 결합된 뚜껑을 역지로 벗기지 마시오 · 어린이보호포장이 적용되지 아니한 제품으로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오
표백제	· 사람 또는 동물에 직접 사용(분사)하지 마시오
섬유유연제	—
광택코팅제	· 자동차 실내에서는 사용하지 마시오
특수목적코팅제	· 자동차 실내에서는 사용하지 마시오
녹 방지제	—
윤활제	—
다림질보조제	—
마감제	—
경화제	—
접착제	· 직접흡입 등 오·남용을 하지 마시오 ·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오 · 어린이보호포장이 적용되지 아니한 제품으로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오 · 용기와 결합된 뚜껑을 역지로 벗기지 마시오
접합제	—
경화촉진제	· 직접흡입 등 오·남용을 하지 마시오
방향제	· 피부가 민감하거나 손상된 사람은 제품을 장기간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시오 · 용기를 던지거나 떨어뜨리지 마시오 · (사용 중) 밀폐된 공간에서의 사용을 주의하고, 직접 연기를 흡입하지 마시오 · (사용 후) 잔여 불씨가 없는지 확인하고, 환기를 충분히 하시오 · (보관 시) 주위에 화기 또는 열기가 없는 곳에 보관하시오
탈취제	· 주변에 불꽃(spark)이 발생되는지 확인하고, 일정량을 분사한 후 가스가 흩어지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다시 사용하시오 · 직사광선이나 열기에 노출시 폭발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오 · 사람 또는 동물에 직접 사용(분사)하지 마시오
물체 염색제	· 주변에 불꽃(spark)이 발생되는지 확인하고, 일정량을 분사한 후

품목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
	- 가스가 흠어지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다시 사용하십시오 · 직사광선이나 열기에 노출시 폭발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물체 도색제	· 주변에 불꽃(spark)이 발생되는지 확인하고, 일정량을 분사한 후 가스가 흠어지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다시 사용하십시오 · 직사광선이나 열기에 노출시 폭발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자동차용 워셔액	· 알코올 냄새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내기 순환모드에서 사용하십시오 · 워셔액을 사용 후에는 창문을 1~2분간 내려 환기를 하십시오 ·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 용기와 결합된 뚜껑을 억지로 벗기지 마십시오
자동차용 부동액	· 보관 시에는 부동액임을 알 수 있도록 기존의 용기 또는 부동액 표시가 된 별도의 용기를 사용하고, 밀봉하십시오 · 에틸렌글리콜형의 부동액과 프로필렌글리콜형의 부동액을 섞어 쓰면 어는점 등 품질의 저하가 우려되므로 혼용하지 마십시오 ·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 용기와 결합된 뚜껑을 억지로 벗기지 마십시오 · 어린이보호포장이 적용되지 아니한 제품으로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인쇄용 잉크·토너	· 제품을 교체·제거할 때 내용물의 누출에 주의하십시오 · 내용물 누출시 분진·미스트·증기의 흡입 또는 피부 접촉에 주의하십시오 · 가정용 진공청소기로 토너를 청소하지 말고, 젖은 천으로 닦아내십시오
인주	—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
미용 접착제	· 직접흡입 등 오·남용을 하지 마십시오 · 어린이보호포장이 적용되지 아니한 제품으로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
살균제	· 다른 제품과 섞어 사용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으니 섞어 사용하지 마십시오 · 표시사항에 기재된 제품의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사람 또는 동물에 직접 사용(분사)하지 마십시오 · 공기 소독(연무 소독, 고압분사용 소독장비 활용하는 경우 포함)의 용도 사용을 금지하오니, 물체 표면에만 사용하십시오 ·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 내용물을 마시거나, 내용물이 눈 또는 피부에 닿을 경우 인체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 시 환기를 충분히 하십시오 · 제품 사용 후 칫솔을 반드시 행구십시오

품목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
	· 제품의 사용방법 및 표준사용량을 반드시 지켜 사용하십시오 · 식품 또는 식기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변기 뚜껑을 내리고 물을 내리시오
살조제	—
기피제	—
목재용 보존제	—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
초	· 불에 타지 않는 초 받침대를 사용하십시오 · 용기를 던지거나 떨어뜨리지 마시오 · (사용 중) 밀폐된 공간에서의 사용을 주의하고, 직접 연기를 흡입하지 마시오 · (사용 후) 잔여 불씨가 없는지 확인하고, 환기를 충분히 하시오 · (보관 시) 주위에 화기 또는 열기가 없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습기제거제	· 투습막을 찢거나 벗기지 마시오 · 흡습제는 물과 닿으면 발열 반응이 나타나 위험하니 주의하십시오 · 흡습제나 조해액이 누출되어 닿으면 식물의 생장이나 금속의 품질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습기제거제를 불에 대고 건조시키지 마시오 · 보충형 습기제거제 전용용기에만 사용하십시오
인공 눈 스프레이	· 주변에 불꽃(spark)이 발생되는지 확인하고, 일정량을 분사한 후 가스가 흩어지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다시 사용하십시오 · 직사광선이나 열기에 노출시 폭발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 화재 가능성이 있으니 분사 중 또는 이후에 불을 붙이지 마시오
공연용 포그액	· 공연 등을 위해 직접 사용 시에는 보호구를 착용하십시오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 본 제품의 사용 전에 용법·용량 및 주의사항을 읽고 사용하고, 지정된 용법·용량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 사용 시에는 작업자 이외에는 모든 사람을 대피시켜야 한다. 특히,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환자 등은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제품을 사용할 때는 음식물을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 · 적절한 보호복장(상하의가 붙은 보호의복, 보호장갑, 작업화 등 상황에 적합한 개인안전장비), 정해진 호흡용 보호구(안면부 여과식 마스크, 송기마스크 등), 안면부 보호구(보안경, 고글, 보안면 등)를 착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복장은 정기적으로 일반 세탁물과 분리하여 세탁한 후 착용하여야 한다. · 작업을 실시한 후 노출된 피부는 반드시 세척하여야 하며, 가급적 목욕하여야 한다. · 피부를 통해 흡수될 경우 해로울 수 있으므로 피부, 눈, 의복 등에 제품이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만약 피부나 눈에 묻었을 경우에는 즉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품목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
	· 시 많은 양의 물로 씻는다. · 제품으로 인해 알레르기 증상이나 피부병 등을 일으키기 쉬운 특이 체질을 가진 사람은 제품처리 작업을 하지 않는다.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 제품 및 분무연기를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사용 전에 식기류, 음식, 어항(수족관), 물탱크 등에 제품이 들어가지 않도록 덮개를 덮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 희석하는 경우에는 희석액이 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균일하게 교반시킨다. 손이나 손가락으로 직접 섞지 않는다. 용기는 전용 제품 용기를 사용하고 다른 것과 겸용하지 않는다. · 다른 제품과 혼합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보건용 살충제	· 조리 기구에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본 제품은 동물이나 식물에 사용하기가 적합하지 않으니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의사의 조언을 구한다. (가능하면 제품사용설명서를 보여줄 것)
보건용 기피제	· 보호되지 않는 전기기구나 기계 등의 작동부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바람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에 위험을 줄 수 있으므로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씨에는 사용을 자제한다.